

## 원격수업운영규정 (규정명 변경: 2020.02.26.)

2015.02.25.제정	2017.06.13.일부개정	2018.07.01.일부개정	2019.05.29.일부개정
2020.02.26.일부개정	2020.09.01.일부개정	2020.11.01.일부개정	2021.03.01.일부개정
2021.05.13.일부개정	2020.11.01.일부개정	2022.05.27.일부개정	2023.04.04.일부개정
<b>2025.01.15.일부개정</b>			

<학사관리팀>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학칙」 제37조에 근거하여 동명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’이라 한다.)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0.2.26., 2020.9.1., 2021.3.1.)

**제2조(정의)** 원격수업이란 방송·통신에 의하여 교수-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하며,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 및 비동시적 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. (개정 2020.9.1.)

**제2조의 2(종류 및 운영방법)** 본 대학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종류 및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1.3.1., 2022.5.27.)

1. 교육부의 「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」을 근거로 개설 운영하는 원격수업을 ‘원격수업’이라 하며,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다.
2. 제1호의 ‘원격수업’ 이외에 본 대학이 정한 운영방법에 따라 원격수업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을 ‘비대면(콘텐츠)수업’, ‘비대면(화상)수업’이라 하며,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비대면수업 운영 지침」에 의한다.

**제3조(이수시간 및 수업시간)** ① 원격수업의 수업기간은 「학칙」 제10조에 따라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. (개정 2020.9.1.)

② 원격수업의 수업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강좌, 스마트기기를 통한 강좌, 원격 영상강좌 그리고 위성강좌 등의 방법에 의한다. (개정 2020.9.1.)

③ 원격수업의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, 학점 당 이수시간은 「학칙」 제37조에서 정하는 요건 및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5.29., 2020.9.1.)

**제4조(원격수업 개설)** ① 원격수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교원은 해당 강좌의 수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원격수업 개설 신청을 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2.26., 2020.9.1., 2021.3.1., 2022.5.27.)

② 원격수업 개설 신청은 **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전 지정** 기일 내에 학사관리팀으로 한다. (개정 2018.7.1., 2020.2.26., 2021.6.1. **2025.1.15.**)

③ (삭제 2020.2.26.)

④ 개설 신청한 강좌에 대하여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개설 확정된 강좌는 원격교육지원센터로 통보한다. (개정 2020.2.26., 2020.11.01.)

⑤ 원격수업 콘텐츠는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경우에만 인정한다. (신설 2023.04.04.)

⑥ 원격수업 개설은 교내에서 개발한 원격수업과 MOOC강좌를 포함하여 **담당교원의 연간 책임학점의 50%이상 개설할 수 없으며**, 교무처장이 승인하는 특정 강좌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(개정 2017.6.13., 2020.2.26., 2020.9.1., 2021.3.1., 2021.6.1. **2025.1.15.**)

⑦ 타 대학 또는 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원격수업의 개설 등에 관하여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. (개정 2020.9.1.)

(표 삭제 2020.2.26.)

[조 제목 개정 2020.2.26., 2020.9.1.]

⑧ 제4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7항에 따른 협약 및 사업 추진(예: LINC 3.0)에 의해 타 기관 또는 타인이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 (신설 2023.04.04.)

1. 공동 개발 및 사용 협의로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.
2. 1주차 수업에서는 반드시 공유 콘텐츠를 사용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교수자 본인 제작 콘텐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.
3. 중간 및 기말시험을 제외하고 2주차 ~ 15주차 중 2개 주차 이상은 교수자 본인이 제작한 콘텐츠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⑨ 제4조 제8항에 따라 공유 콘텐츠를 활용한 원격수업의 교수자 책임학점은 1학점으로 하며, 1학기에 최대 2학점까지 인정한다. 또한 개설학점은 제4조 제6항에 포함한다. (신설 2023.04.04.)

⑩ 제4조 제8항에 따른 공유 콘텐츠라 할지라도 타 기관 또는 타인의 콘텐츠를 임의로 편집하여 다른 교과목 강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없다. (신설 2023.04.04.)

제5조(수강신청 및 폐강) ① 원격수업의 수강신청, 정정 및 폐강 등의 기준은 일반강좌에 적용되는 학칙상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. (개정 2020.9.1.)

② 원격수업의 강좌 당 정원은 100명을 기본으로 하며,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초과할 수 있다. (개정 2020.9.1., 2021.3.1.)

③ 수강신청 인원이 폐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수업및학사운영규정」 제7조의 폐강기준에 의거하여 폐강 또는 일반강좌로 전환한다. (개정 2019.5.29.)

제6조(수업운영) ① 온라인 수업(100%)은 모든 수업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. 단, 평가(시험)는 예외로 한다. (개정 2022.5.27.)

② 블렌디드 수업(혼합형 학습)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, 수업 운영 비율은 평가(시험)를 제외하고 온라인수업 50% ~ 70% 이내, 오프라인수업 30% ~ 50%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. 단, 수업 콘텐츠는 13주차 이상을 제작하여 탑재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9.1., 2022.5.27.)

③ 원격수업으로 개설되지 않은 학습관리시스템(LMS)의 e-Class수업은 일반강좌 수업을 보조(지원)하거나, 학습관리시스템(LMS) 자원을 이용하는 온라인 수업을 말하며, 이 경우에는 원격수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(개정 2020.9.1., 2020.11.01.)

- ④ 온라인 공개강좌(MOOC) 및 플립러닝(Flipped Learning) 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(신설 2017.6.13.)
- ⑤ 담당교수는 수강인원 100명 이상인 대규모 단위의 원격수업인 경우 수업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인력 운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 (신설 2020.2.26., 개정 2020.9.1., 2021.3.1.)
- ⑥ 담당교수는 블렌디드 수업의 온라인수업용 원격수업 콘텐츠를 학습관리시스템에 탑재하고, 오프라인 출석 결과는 온라인 강의실 또는 전자출석부에 따로 등록하여야 한다. (신설 2020.9.1., 개정 2020.11.01.)

제7조(출석 및 학습평가) ① 출석은 「학칙」 제47조에서 정의한 수업일수 11주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, 출석일수에 미달된 교과목은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.

- ② 원격수업의 출석평가는 학습관리시스템상의 접속시간(접속횟수)을 이용한 온라인 출석 방법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을 혼합하여 평가한다. (개정 2020.9.1.)
- ③ 학습평가는 수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수업방법 및 교과 특성에 따라 담당교수가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. (개정 2020.9.1.)
- ④ 학습평가 중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등의 평가는 출석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「권역이러닝지원센터」로 지정된 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, 군 복무 중 수강하는 원격수업 및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외국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과 감염증 발생 등 비상사태 시의 원격수업은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(개정 2019.5.29., 2020.9.1.)

제7조의 2(수업평가) 원격수업에 대한 수업평가는 학기별 2회 이상 실시하며, 수업평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수업평가규정」에 따른다.

[본조 신설 2020.9.1.]

제8조(성적) ① 성적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수업및학사운영규정」에 따른다. (개정 2019.5.29.)

- ② 원격수업의 성적은 수업계획서의 성적평가 방법 및 비율에 따라 산출한다. (개정 2020.9.1.)
- ③ 삭제 <2020.9.1.>

제9조(콘텐츠 개발 및 질 관리) ① 신규 콘텐츠 개발 절차 및 제작기준은 ‘원격교육지원센터규정’에 따른다. (개정 2019.5.29., 2020.11.01.)

- ② (삭제 2020.11.01.)
- ③ (삭제 2020.11.01.)
- ④ 콘텐츠 산출물 및 완료보고서는 원격교육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5.29., 2020.11.01.)
- ⑤ (삭제 2020.11.01.)
- ⑥ 개발한 콘텐츠는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5.29., 2022.5.27., 2023.04.04.)

1. 콘텐츠 수업 운영기간은 제작완료 연도를 기준으로 3년간으로 한다. 단, 협약에 의한 공유

콘텐츠 또는 공모전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간으로 할 수 있다.

2. 콘텐츠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심의를 거쳐 콘텐츠의 수정 및 보완, 재제작, 폐기 등을 할 수 있다.

3. (삭제 2022.5.27.)

⑦ 원격수업은 차시별 동영상 콘텐츠 25분과 학습활동 1건(25분) 이상을 합하여 총 50분 이상으로 구성 또는 동영상 콘텐츠 50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학습활동별 인정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0.11.01., 2022.5.27.)

1. (삭제)

2. 토론: 25분

3. 퀴즈: 25분

4. 과제: 25분

5. 읽기자료: 25분

⑧ 원격수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온라인수업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(신설 2020.11.01.)

[본조 제목 개정 2019.5.29.]

제9조의 2(원격수업관리위원회) ① 원격수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학사관리팀에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20.9.1., 2021.6.1.)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, 위원은 교무부처장, 학생 대표 3명, 원격교육지원센터장, 학사관리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, 간사는 원격수업 업무 담당자로 구성한다. (개정 2020.9.1., 2020.11.01., 2021.3.1., 2021.5.13., 2021.6.1.)

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0.9.1.)

1. 원격수업 운영 계획 수립

2.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, 심사 및 선정, 평가

3. 원격수업 품질 관리 및 개선

4. 학습관리시스템(LMS) 및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 개선

5. 기타 원격수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[본조 신설 2019.5.29.]

제10조(연구비 지원) ① 원격수업 강좌용 콘텐츠의 신규개발 및 수정·보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. (개정 2020.11.01.)

② 공모전을 통해 진행되는 모든 콘텐츠 개발은 KOCW 사이트에 탑재 운영하는 것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보존기간 및 파기) ① 원격수업 강좌용 콘텐츠의 학습활동 데이터파일은 5년간 보존한다. (개정 2020.11.01.)

② 학습활동 데이터 파일 파기는 보존기간 경과 후 1년 이내 파일을 직접 삭제한다.

제12조(기타) 원격수업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수업및학사운영규정」  
및 기타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. (개정 2019.5.29., 2020.9.1.)

[전문개정 2015.2.25.]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e-러닝 콘텐츠 개발 신청서 (삭제 2020.11.01.)

[별지 제2호 서식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 (삭제 2020.11.01.)

[별지 제3호 서식] e-러닝 콘텐츠 개발 계획서 (삭제 2020.11.01.)

부 칙

제1조(시행일자)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자) 이 규정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